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0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10년 10월 8일

3. 제안이유

- 제천 수산면 일부지역에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제천시청의 교육 지원 혜택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 청원군 오창과학단지내 (가칭)양청중 개교에 따라서 각리중과 균형적 학생수용을 위한 중학교군 설정
- 보은군 기숙형중학교 운영에 따라 통·폐합 중학교의 학구 조정
- 괴산 사리면 일부지역에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과 괴산군의 교육지원 혜택을 위한 공동학구 지정
- 음성 금왕읍에 누락된 지역을 반영하고 경기도 전출생 중학구의 해당 지역 조정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명 변경에 따른 타시·도 전출생 중학구의 학교명 변경

4. 주요내용

가. 신설학교 중학교군 신설

- 청원군 오창읍 과학단지내에 (가칭)양청중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각리중학교와 함께 오창과학단지학교군으로 설정하여 운영

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동학구 지정

-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하천리, 능강리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제천시청의 교육지원 수혜를 위하여 청풍중학교와 수산중학교의 공동학구지역으로 지정
-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등 6개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괴산군청의 교육지원 수혜를 위하여 증평읍학교군과 괴산중학구의 공동학구 지정

다. 보은 기숙형중학교 운영에 따라 중학구 조정

- 보은 속리중학교 및 내북중학교의 학구지역을 기숙형중학교 (가칭)원남중학교 학구지역으로 통합하고, 산외면 봉계리 등 14개 지역을 보은중학교와 보은여자중학교 학구에서 기숙형중학교 (가칭)원남중학교 학구로 변경

라. 우리도와 타시도간 학구지역 조정

- 음성군 금왕읍 호산1리는 삼성중학교에 인접해 있고, 호산2리는 타시·도인 경기도 배영중학교에 인접해 있음에도 호산1리는 경기도 배영중학교 학구로 호산2리는 삼성중학교 학구로 포함되어 있어 불합리함
- 따라서 현재 삼성중학교 학구에 호산1리를 포함하고 경기도에 인접해 있는 호산2리를 경기도 배영중학교 학구로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선택을 넓히고자 함

- 경기도교육청의 통합학교 개편으로 배영중학교에서 율면중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5. 검토의견

- 본 학교군 고시 개정안은

- 기존 각리중학교 학구에 신설되는 (가칭)양청중학교를 포함하여 오창과학단지학교군으로 설정하고,
- 제천시 수산면 3개 지역과, 괴산군 사리면 6개 지역을 공동학구로 확대하며,
- 기숙형중학교 설립에 따라 속리중학교 및 내북중학교 학구를 원남중학교 학교로 통합하는 한편, 산외면 봉계리 등 14개 지역을 보은중, 보은여중학구에서 원남중학교 학구로 변경하고,
-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음성군 삼성면 호산 1리(기존누락)를 삼성중학교 학구에 포함하고, 호산 2리를 경기도 율면중학교와 공동 학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 학교신설에 따른 학구 추가와 기존 학구를 조정하여 학생들의 복리 증진, 통학편의, 학교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됨.

- 다만, 보은지역교육지원청의 산외면 봉계리 등 14개 지역을 보은중, 보은여중학구에서 기숙형 중학교인 원남중학교 학구로 변경하는 것과 괴산중평교육지원청의 괴산군 사리면 6개 학구 조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관 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①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 ②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 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